

# 2024학년도 학생생활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안)

2024. 3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 【 목 차 】

### I. 2024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기본 방향

- 1. 학생생활교육 목표 ..... 1
- 2. 학생생활교육 추진 방향 ..... 1

### II. 중점 추진 과제

#### 【중점1】 소통과 공감에 있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 1-1. 소통과 공감의 학급 문화 조성 ..... 3
- 1-2.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교육 강화 ..... 5

#### 【중점2】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구축

- 2-1. 단위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 8
- 2-2.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강화 ..... 12
- 2-3.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 14

### ▣ 부 록

- 1. 2024학년도 월별 학생 생활교육 업무 추진 일정 ..... 16
- 2.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서식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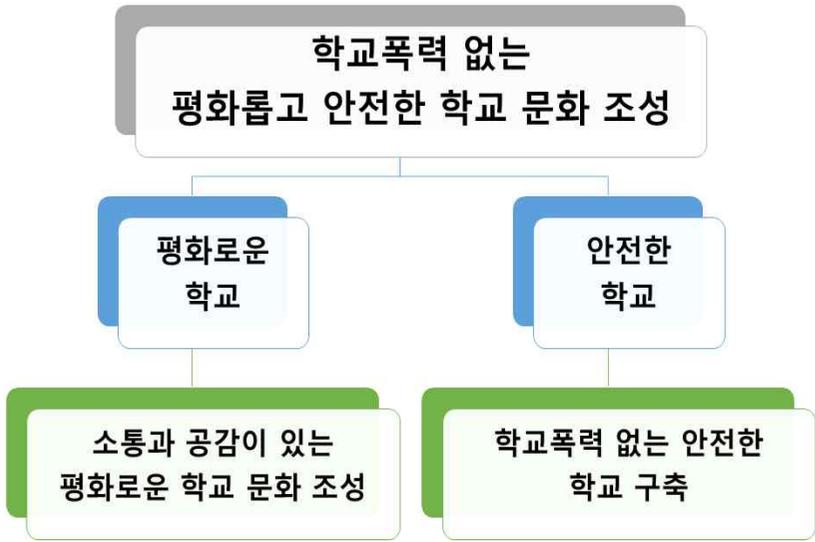


# I. 2024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기본방향



# II. 중점 추진 과제

## 1. 학생생활교육 목표



## 2. 학생생활교육 추진 방향

- 차이를 존중하는 생활공동체 조성을 통한 존중과 책임의 학생생활교육 강화
- 상호 존중에 기초한 생활교육 내실화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
- 단위학교 유형별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한 담임 중심의 생활교육 지원
- 유형별 예방 교육 내실화를 지원을 위한 예방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는 책임 교육 강화
-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교사 연수 확대 및 학생 상담 역량 강화
- 학생 안전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
- 관계기관과 연계한 범사회적 위기대응 체제 구축

정책 과제	세부 과제	세부 사업
1. 소통과 공감이 있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1-1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	1-1-1. 상호 존중하는 학급문화 조성
	1-2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교육 강화	1-2-1. 상호 존중하는 문화 형성을 위한 생활교육 연수지원 1-2-2. 관계 중심 생활교육 교사 연수회 지원 1-2-3. 책임을 다하는 생활교육 내실화
2.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구축	2-1 단위 학교 중심 학교폭력예방활동 운영	2-1-1.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실시
		2-1-2.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운영
		2-1-3. 유형별 맞춤형 예방 교육 내실화
2-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강화	2-2.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강화	
2-3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2-3-1. 학생보호인력 운영	



# 소통과 공감에 있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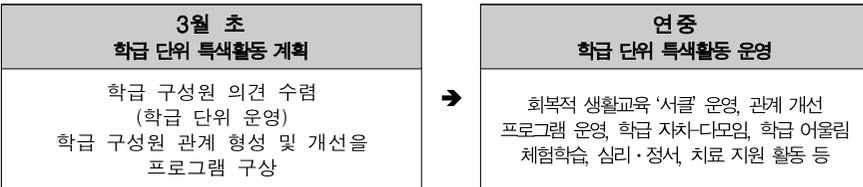
## 1-1 소통과 공감의 학급 문화 조성

### 1-1-1 상호 존중하는 학급 문화 조성

#### ■ 따뜻한 학급 학급 문화 조성 사업

○ 3월 첫 주, 새 학기에 대한 부담과 긴장을 낮추고 학생들의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계 맺기 활동을 통해 사제 간, 학생 간 상호 존중의 생활공동체 형성

- 기간: 학기 초, 연중
- 대상: 관내 모든 학교(유·초·중·고등학교 전체)
- 기간: 3월 및 연중
- 운영 주체: 단위 학급
- 주요 내용
  - 지역적 특성과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특색있는 학급활동 지원
  - 학급 사회성, 신체 활동 함양,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학급단위 활동 진행
  - 상호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급문화 조성으로 교육력 회복 기반 마련
  - 학급 단위 자율적 교육활동 운영을 통한 배려·존중 중심 학급 문화 형성
  - 모든 학생들의 심리 정서 지원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학교 공동체로 복귀 도움
  - ‘따뜻한 학급 문화 조성사업’ 운영을 위한 흐름도



- 학교 특색에 맞는 학급 단위 특색 활동 운영 계획 수립 (예시)
  - [중점 가치]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형성
  - [학생 생활 적응] 학급 단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교과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기타] 학급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 ■ 3월, 우정이 싹트는 교실을 위한 담임 중심 생활교육

- 기간: 3월 한 달
- 대상: 관내 모든 학교(유·초·중·고등학교 전체)
- 방법: 조·종례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한 생활교육
- 주요 활동 내용(예시)

- |                |                    |
|----------------|--------------------|
| ○ 함께 세우는 학급 목표 | ○ 담임이 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
| ○ 우리반 생활약속 만들기 | ○ 폭력 없는 교실 만들기 서약식 |
| ○ 학생, 학부모 상담   | ○ 다양한 친교 활동        |

#### ■ 학생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생활교육지원단 운영

- 기간: 2024.4.1.~2025.2.28.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카카오톡 채널명 - 고창생활교육)
- 방법: 학급, 학교 생활교육에 대한 1:1 맞춤형 질의응답
- 주요 활동 내용(예시)

- |               |                   |
|---------------|-------------------|
| ○ 회복적 생활교육    | ○ 학교폭력예방교육        |
| ○ 관계 중심 학급 운영 | ○ 배려와 존중이 있는 학급문화 |

## 1-2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교육 강화

### 1-2-1 상호 존중하는 문화 형성을 위한 생활교육 연수 지원

#### ■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

- 대상: 관내 모든 학교(유·초·중·고등학교 전체)
- 시기: 연중
- 운영 방안
  - 목적: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위한 교원 인식 제고
  - 방침: 각종 교원 연수 시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내용 편성 및 연수지원
    - 학교관리자 연수(3월~10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3월~10월)
    - 학교폭력업무담당자 연수(연중)
    - 학교폭력 조사관 연수 및 협의회(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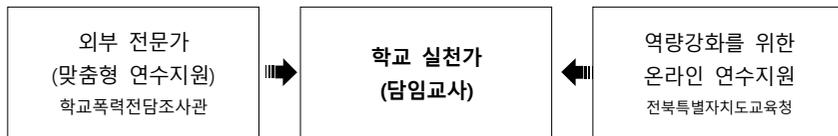
### ■ 찾아가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연수 운영

- 대상: 관내 모든 학교(유·초·중·고등학교 전체) 중 신청(희망)학교
- 시기: 연중
- 운영 방안
  - 학교로 찾아가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연수
  - 관계 중심 질문과 관계 중심 상담을 통한 적용
  - 갈등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서클 운영 실습
  - 관계 중심 대화모임 및 조정자 역량 강화 등
  - 갈등 전환을 위한 관계 중심 조정 전문가 및 강사 요원으로 활동

## 1-2-2 관계 중심 생활교육 교사 연수회 지원

### ■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 교사 연수회 운영

- 목적: 학교별 동학년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토대로 학급운영을 시도하는 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교사 저변 확대
- 대상: 관내 초·중등 희망(신청)팀
- 시기: 2024년 3월 ~ 12월
-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 교사 연대 활성화 방안



-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과 확산을 위한 중재 모델(회복적 쉼표) 중점 운영

## 1-2-3 책임을 다하는 생활교육 내실화

###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 교육적 차원의 학생 생활 교육 및 징계

#### ● 근거(초중등교육법 제18조)

○ 제18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중요)

- 구성: 학교 규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반드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재 량] 위원장은 교감(교감 미배치: 교무부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재 량]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생활교육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

### ■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제작 및 배포(2024.3.)

#### ● 포함 내용

- 학교 단위 학생징계 절차
- 이의 제기 및 재심의 절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학교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조치 불복

#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

## 2-1 단위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기본 방향

-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교육 강화
- 담임·현장·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 경쟁 중심 학교문화 개선하여 따뜻한 관계 중심 학교문화 조성
- 교육력 회복 중심의 사안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

### 2-1-1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학생)

- 주제: 학교장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 횟수: **반드시** 연 2회(학기당 1회)이상, 총 6시간 이상(사이버폭력예방교육 1시간, 도박예방교육 1시간 포함)
-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대처방안 등
- 방침: 학급단위 실시,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교육부 지침(학교폭력예방교육 11시간 권장): 안전교육(51시간)에 5차시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장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6시간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교직원 및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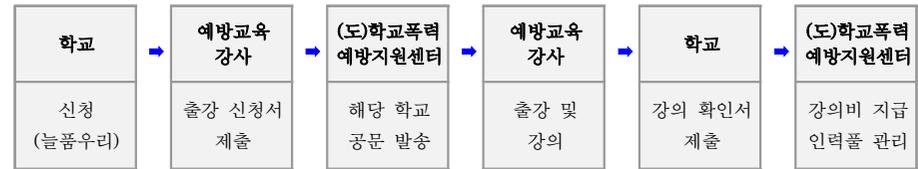
- 주제: 학교장
- 대상: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 시기: **반드시** 연 2회(학기별 1회)이상
-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계 중심 생활교육 안내
- 방침: 학교폭력예방교육계획 수립, 학교폭력 교직원 의무연수 이수(1회 인정)

####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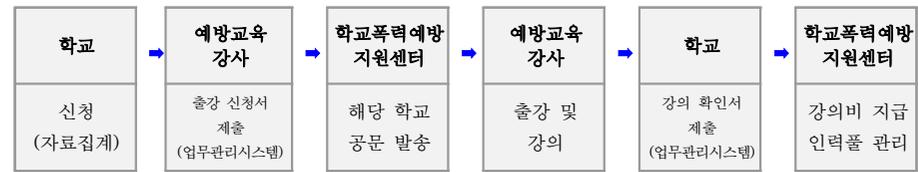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 시기: 2024.4.~2025.2.
- 운영 방안

유형	내용
학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어자 교육 중심(강의, 선택 활동 3가지)</li> <li>초 3개 영역(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고 각 1개 영역</li> </ul>
교원용 (2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li> <li>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포함</li> </ul>
학부모용 (2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li> <li>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등 포함</li> </ul>

#### 운영 절차(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운영 절차(고창교육지원청) ※ 추후 공문 안내 예정(4월 중)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작성

- 주제: 학교장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직원, 보호자
- 시기: 1학기 초
- 주요내용: 학기초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작성 및 운영
- 방침: [부록2] 자료 활용 학기 초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작성

####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 대상: 학교 홈페이지
- 시기: 3월, 수시
- 내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학생, 교직원, 학부모)
  -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계획 게시
  - **반드시** 학교폭력예방계획 수립(학교)
- 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림

## 2-1-2 상담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운영

###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상담 운영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중 희망 학교(학급)
- 시기: 4월~9월
- 주요내용
  -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운영
  - 목적: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운영으로 학교폭력 감소 유도

###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3교
- 시기: 5월~9월
- 주요내용
  - 학교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맞춤형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 목적: 생활지도 여건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 방침: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1~6 선택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
  - 예시: 또래활동, 사제동행, 상담활동 등

### ■ 학교폭력 예방 중점학교 운영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3교
- 내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시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

###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 시기: 연중 6차시 중 어울림프로그램(5차시, 사이버폭력예방 1차시 포함), 도박예방 1차시
- 주요내용

#### ※ 어울림 프로그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개발한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 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핵심 역량**이 신장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역량 2~3개를 선정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임

- (방침)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활용방법 1) **늘봄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지원 <https://office.jbedu.kr/woori>
- 수업지도안과 활동지가 학교급별로 정리되어 있음
- (활용방법 2)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https://www.stopbullying.re.kr/mps>) 활용
- (계정 및 비밀번호) 늘봄우리 홈페이지 안내
- (활용방법 3)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https://doran.edunet.net>) 활용
- (계정 및 비밀번호) 교사용 공용인 인증서 활용 가입 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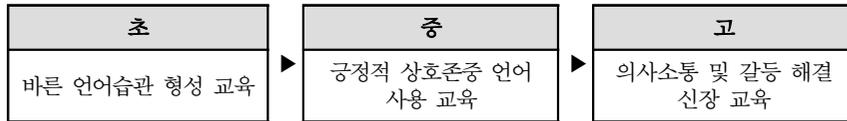
## 2-1-3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 내실화

### ■ **반드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 횟수: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사이버폭력예방교육 1시간 포함**
- 주요내용: 사이버폭력의 개념·실태, 유형, 대처방안 등
- 방침: 학급단위 실시,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 전북경찰청, 도청, 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인터넷드림마을, 상담복지센터 등
  - 정보 공유·협조, 프로그램 지원시스템 구축
-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 자료 탑재 활용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http://www.아인세.kr>), <http://www.dorandoran.go.kr>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홍보 강화
-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신청 개요(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연계)
  - 교육 유형 : 찾아가는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대면, 2차시)
  - 신청 기한 : 연중
  - 신청 방법 : 경찰청 홈페이지-신고/지원-사이버안전지킴이-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2.jsp>

### ■ 언어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 언어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 교육
  -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임을 명확하게 인식토록 교육
  - 학생이 욕설 사용 후에도 교사와 부모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욕설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습성을 갖게 됨을 인식
  - 욕설 금지에서 차별·편견·비난 언어 금지 등 바람직한 의사 소통·비폭력 대화 교육으로 확대



- 언어폭력 관련 생활교육(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밥상머리 교육,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행사 등
  - 언어순화를 위한 다양한 교내 행사 추진

## 2-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강화

###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2021.12.2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2023.11.10.)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20.12.2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2023.6.20.)

### 2023년 도박 실태조사 현황

#### 도박 경험률

- 참여학생 28,354명 중, 1,298(4.6%)이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성별: 남학생(6.8%) > 여학생(2.4%)
- 학교급별: 중학생(4.6%) > 고등학생(4.5%)
- 계열별: 특성화고(6.4%) > 일반고(4.1%)
- 지역별: 그 외 지역(4.7%) > 전주군산·익산(4.5%)

#### 도박 유형

- 온라인 카지노(25.3%) > 인터넷 합법 스포츠 배팅(15.1%) > 온라인 카드·화투(6.9%)

#### 도박 인지 경로, 시간, 자금 마련 등

- 도박 인지 경로: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33.3%) >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20.6%) > 인터넷 배너 광고(2.8%)
- 도박 경험 시간: 주말 공휴일(15.3%) > 하교 후 집에서(12.9%) > 쉬는 시간, 점심 시간(10.2%)
- 도박 자금 마련: 용돈이나 선물 받은 상품권(34.1%) > 친구·선후배·주변 사람에게 빌린 돈(5.5%) > 아르바이트 월급(5.3%)

#### 도박을 같이 한 사람

- 학교 친구나 선후배(37.7%) > 혼자(18%) > 가족들(5.8%)

#### 상담 치료 경험

- 현재 도박을 지속하는 학생의 9.7%가 도박 중단을 위한 상담(치료) 경험이 있음

### [학교] 도박예방 교육 강화

#### 반드시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

-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4학년): 담임중심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학년 초 교육자료 공문 발송)
-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교육 신청 또는 학교 자체 교육

#### 전문기관 협력 체계 구축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활용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예방 교육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신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http://www.kcgp.or.kr>)→예방홍보→예방교육→교육신청  
예방 교육 문의: 전북센터(☎063-255-1336)
- 온라인 예방 교육 자료 안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http://www.kcgp.or.kr>)→예방홍보→예방콘텐츠→온라인예방교육콘텐츠
- 도박 문제 상담  
온라인 상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http://www.kcgp.or.kr>)→헬프라인→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36**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

#### 도박 사안 처리 및 조기 개입

1. 도박 예방 교육(평상 시)	2. 도박 문제 발생	3. 위기 개입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도박 문제 예방활동 및 예방 교육 실시</li> <li>▶ 도박문제 선별검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도박 문제 인식 및 식별</li> <li>▶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선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위기 개입 요청(☎ 1336)</li> <li>▶ 교육청 사안 보고</li> </ul>
4. 위기 개입	5. 종결 및 재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집중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상담사례관리, 치료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박 문제(중독) 학생 지속 관리</li> <li>▶ 재발방지를 위한 추수 지도 실시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전주)</li> </ul>	

## 2-3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 2-3-1 학생보호인력 운영

#### 2024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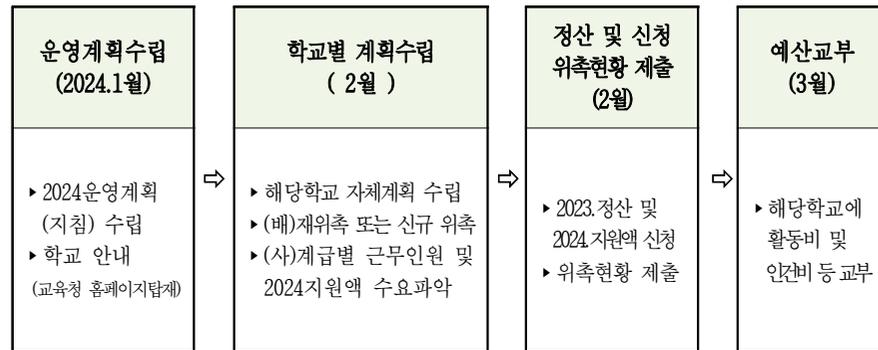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가이드라인 개정 알림(2018.11.7. 교육부)

#### 2024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지원계획 수립

##### 2024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지원계획 안내 (답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기본계획안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과별홈페이지 > 민주시민교육과 > 부서자료실 > 학생생활교육

##### 추진 일정



#### 학생보호인력 운영

#####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사회복지무원) 운영 목적

-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의 학생보호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2016학년도까지 운영했던 학교안전지킴이(경비인력) 대체 방안
-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에 학생보호인력 우선 배치
- 청년들의 예외 없는 병역의무(사회복무)를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이행

##### 학교안전지킴이 공정한 선정절차 준수

-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가진 자를 배움터자원봉사자로 위촉
- 근로계약서 작성 절대 금지, 담당자의 활동일지 작성으로 활동비 지원
- 주요 활동 내용
  -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및 학교 내·외 순찰
  -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봉사활동에 속한 역할을 부여

##### 사회복무요원 운영내용

- 사회복지요원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 내부결재 후 사회복지요원 확인필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 주 업무내용, 부수 지원업무 등 명시)
-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부수 임무 제한 :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 주요 활동 내용
  -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기타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 관내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업무담당자 변경 시 후임자 인계

- 학교폭력전담기구
  - 설치기관 : 각급 학교별로 설치
  - 구성권자 : 학교장
  - 구성원 : 학교별로교감, 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
  - 역할 : 학교폭력 사안접수(조사) 및 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사안보고(48시간 이내), 사안조사 결과 학교장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회복조정)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계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 주관기관 : 고창경찰서(여성청소년계 T. 560-0343)
  - 역할 :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사안 해결 지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 담당학교
  - 김진희 경사
    - 초(6교) : 대아초, 동호초, 무장초, 해리초, 봉암초, 가평초
    - 중(5교) : 심원중, 영선중, 고창북중, 고창남중, 자유중
    - 고(2교) : 영선고, 고창여고

· **최다인 순경**

- 초(7교): 고창초, 매산초, 대산초, 공음초, 선동초, 고수초, 상하초
- 중(5교): 고창중, 공음중, 신희중, 상하중, 해리중
- 고(2교): 강호항공고, 해리고

· **김대수 경위**

- 초(8교): 고창남초, 부안초, 신희초, 심원초, 흥덕초, 성내초, 아산초, 성송초
- 중(4교): 아산중, 대성중, 성내중, 흥덕중
- 고(2교): 고창고, 고창북고

**기타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 구축 및 사안처리**

□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 구축**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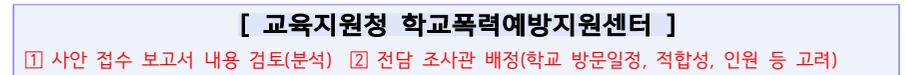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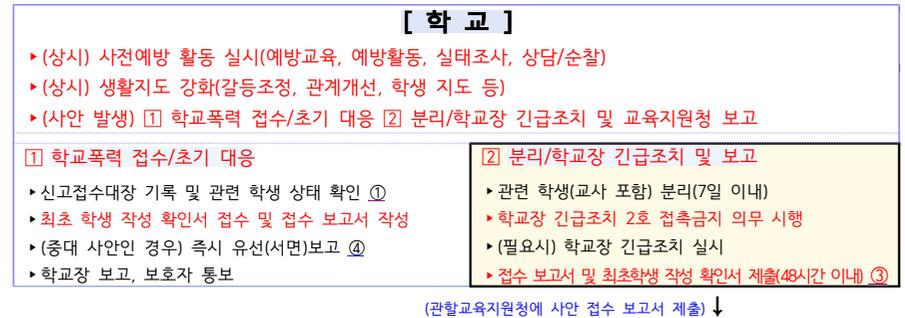
- (구성)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위촉 (**활동기간: 1년**)
- \*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규모) 지역별 **학교폭력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 (**교창 3명**)

○ (위촉) **교육지원청별**로 공개 모집 → 심사·선발 →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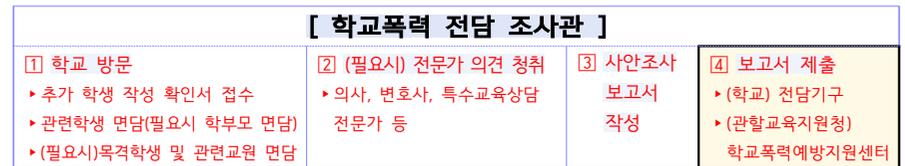
※ 전담 조사관과 관계개선지원단이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반드시 결격사유 조회 후 위촉
- 사안 조사의 즉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사관 지원 가능
  - ※ 조사관 파견시 1건당 5만원의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
- 성사안 조사를 위해 교육지원청 여건을 고려하여 여성 조사관 반드시 위촉
- (역할)
  -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교육지원청에 결과 통보, 사례회의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필요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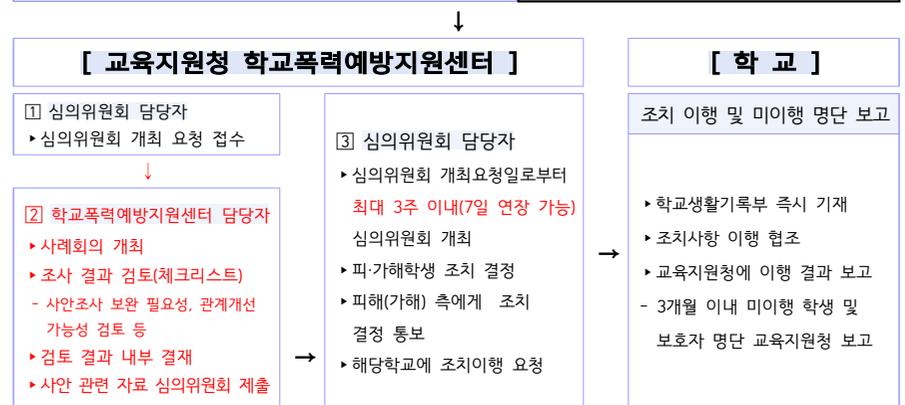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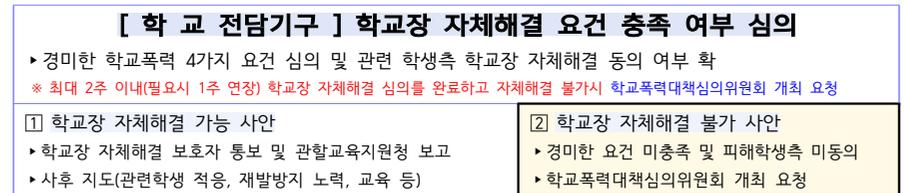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 (전담 조사관 5일 이내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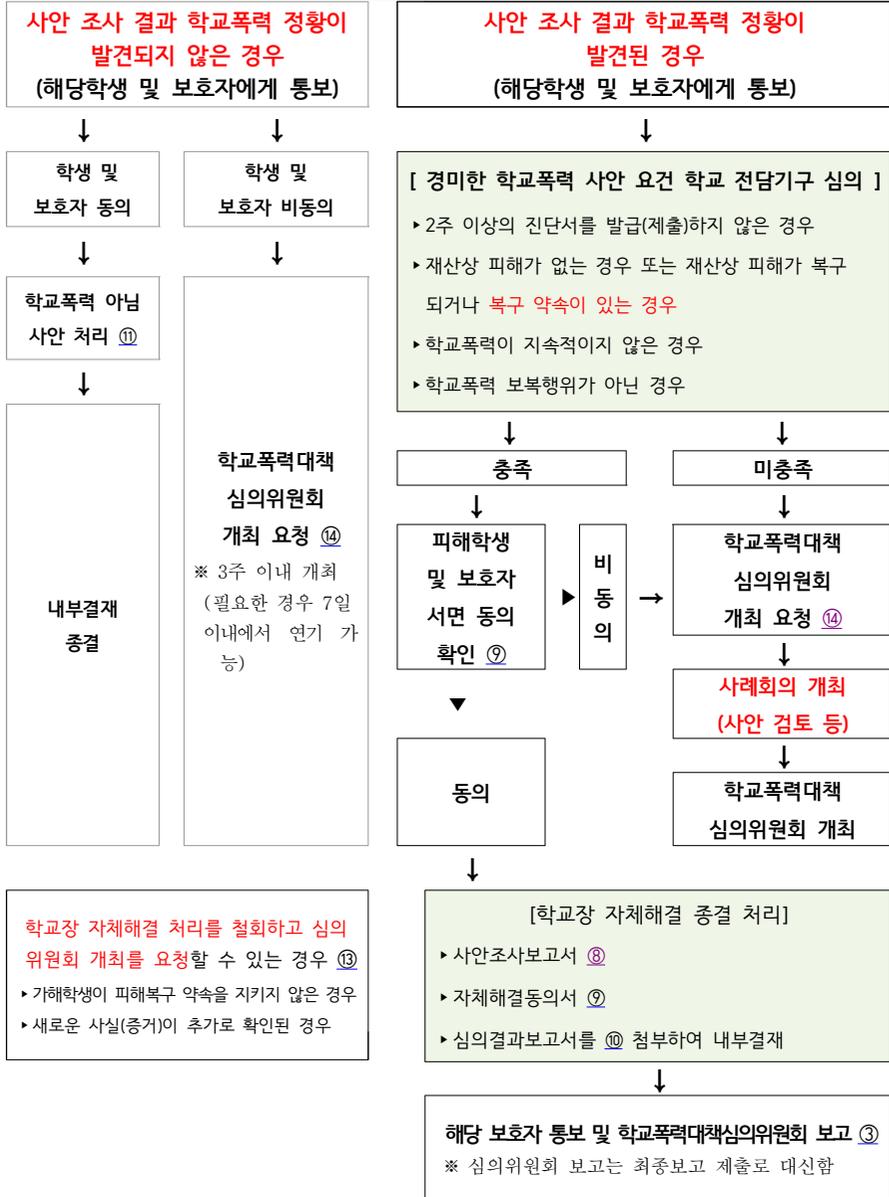


(전담 조사관이 해당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사안조사 보고서 제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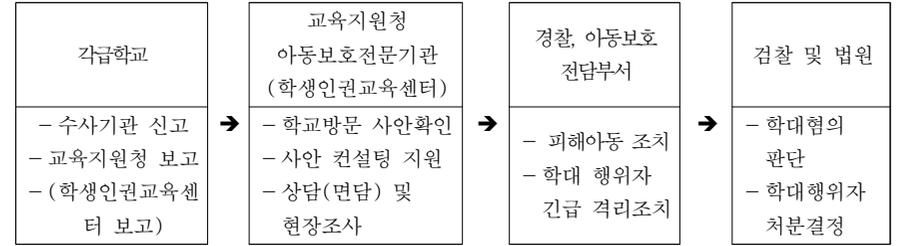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전담기구 심의

(피해 및 가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에만 해당)



## □ 아동학대 사안처리

○ 절차(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 사안 보고서는 "학교폭력 사안보고"양식으로 하되 언론보도나 증대사안이 경우 "아동학대 보고 요지"별도 작성하여 보고

## 부록 1 2024년 월별 생활교육 업무 추진 일정

월	사업명	대상	시기	장소	세부 내용
1월	합동교의 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연중, 방학기간	고창관내	생활지도 취약지역 합동교의 생활지도
2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전체회의 및 연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	2월중	교육 지원청	전체회의 및 역량강화 연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위촉 및 연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월중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조사관 위촉·연수 등
3월	학교생활교육계획 수립 (학교폭력예방교육, 합동교의 생활교육 계획 포함)	초·중·고	3월중	각 학교	2024. 학생생활교육계획 참고
	신학기 및 연중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초·중·고	연중, 고사기간	고창관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4월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연수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교육지원청 (초·중·고)	4월중	예정	2024.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연수
5월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중·고	4월중	전체 학교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7월	여름방학 중 합동 생활지도 컨설팅	초·중·고	7-8월중	고창관내	방학 중 합동생활지도
8월					
9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전체회의 및 연수	초·중·고	9월 1주	교육지원청	전체회의 및 역량강화 연수
10월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중·고	9월-10월	표집 학교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연수	교육지원청	10월중	예정	2024.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연수
11월	학교폭력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11월중		승진가산점 제출 및 정량평가 점검
12월	수능이후 연말연시 합동 생활교육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12월중	고창관내	수능 이후 교내의 생활지도 강화
1-2월	학년말·졸업식 합동 교의 생활교육	초·중·고	1-2월중	고창관내	졸업식 문화 내실화 추진

## 부록 2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서식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예시①

#### 1. 책임규약 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 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예시)

	<보호자/학부모>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li> <li>✓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li> <li>✓ 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원의 의견 수렴)</li> </ul>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li> <li>✓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li> <li>✓ 수업시간을 내실있게 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원의 의견 수렴)</li> </ul>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성명 (서명)  
교사 성명 (서명)

2024. 00. 00.  
000 학 교 장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예시②

### 2. 책임규약 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제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학생으로서의 책임> ✓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한다.(구성원의 의견 수렴)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보호자/학부모로서의 책임> ✓ 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구성원의 의견 수렴) ✓ _____ ✓ _____ <div style="text-align: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성명 (서명)</div>
_____ <div style="text-align: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성명 (서명)</div>	<교사로서의 책임> ✓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구성원의 의견 수렴) ✓ _____ ✓ _____ <div style="text-align: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성명 (서명)</div>

2024. 00. 00. 000 학 교 장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문구 예시(안)

#### <학생>

-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는다.
-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본다면, 방관하지 않는다.(신고하기,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하기)
- 다른 학생들을 존중하며,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 <보호자/학부모>

-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아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한다.
- 학교 안팎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한다.
-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한다.

#### <교사>

-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학교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소통한다.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예시③

※ 필수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한 규약서 (항목별 내용 제시 방식은 변경하여 활용 가능)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 [책임규약의 목적]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은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 [참고] 교내외 신고 방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 pp.18~19

- 교내 신고: 구두 신고(교사에 직접),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휴대전화 등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방법 활용
- 교외 신고: 112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

-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 [참고] 가해학생 조치 사항

구분	가해학생 조치 사항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가해학생 부과 가능한 긴급조치

-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5호+제6호(동시 부과 가능) ※ 7호 포함(법령 개정 추진 중)

####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 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학생생활 전반
- [학생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 ▶ 제2조(정의)
- 4.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
- 5. 조안: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 6.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
- 7.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 8.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
- 9.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
- 10.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 ▶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 우리 학교 구성원의 책임의 세부 내용은 학교 규칙을 바탕으로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되, 학교 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

<학생>

- (예시) 학교 규칙 및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보호자/학부모>

- (예시) 학교 규칙 및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교사>

- (예시)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_\_\_\_\_
- \_\_\_\_\_
- \_\_\_\_\_

[규약 서명]

나는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000. 00. 00.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성명 (서명)

교사(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담임교사): 성명 (서명)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을 맺고자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구성원별 책임을 담은 규약서를 만들고 규약 체결을 통하여 모두의 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 의식을 공고히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 1. 의견 수렴 내용

학생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보호자/학부모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 2.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제안 방법

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학교 자체 알리미 서비스에 첨부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필수내용 확인 후 학교 구성원별 책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써서 제출하기

나. 기 간: 2024. 0. 0.(0요일) ~ 2024. 0. 0.(0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다. 대 상: 학생, 보호자/학부모

라. 제안방법: 가정통신문 회신

----- < 절 취 선 > -----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수렴

(     )학년 (     )반 학생 성명 (     )     )  
보호자/학부모 성명 (     )     )

학생	희망하는 내용	(예)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이유	
보호자 학부모	희망하는 내용	(예)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발생 시 평화롭게 소통한다.
	이유	

2024. 0. 0.

○ ○ ○ ○ 학 교 장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수렴

○○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을 맺고자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구성원별 책임을 담은 규약서를 만들고 규약 체결을 통하여 모두의 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 의식을 공고히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 1. 의견 수렴 내용

학생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건전한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으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 2.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제안 방법

가. 학교알리미 서비스에 첨부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필수내용 확인 후 학교 구성원별 책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하기

나. 기 간: 2024. 0. 0.(0요일) ~ 2024. 0. 0.(0요일) 00:00 마감

다. 대 상: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

라. 제안방법: 학교 자체 알리미 서비스로 회신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수렴

학생	희망하는 내용	(예)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이유	
보호자 학부모	희망하는 내용	(예)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발생 시 평화롭게 소통한다.
	이유	
교직원	희망하는 내용	(예)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유	

2024. 0. 0.

○ ○ ○ ○ 학 교 장

# 보 고 요 지

## ○○학교 관련 사안

### ■ 사안개요

- 발생일자 : 2024. 0. 00(월), 00:00 ~ 00:00
- 관련학생 : 관련(피해)학생 : 000(남, 0학년)  
                  관련(가해)학생 : 000(남, 0학년)
- 사건장소 :

### ■ 사안요지(학교조사 내용)

- 3. 2. 피해학생 000가 가해학생 000에게 0000한 이유로.....
- 
- 
- 
- 
- 3. 3. 현재 병원 입원 치료 중, 자택 치료 중

### ■ 학교 조치사항

- 3. 2. ○○○선생님과 ○○○가 병문안 부모님 면담
- 3. 4. 피해학생 심리 치료 및 상담 치료 중(000Wee)
- 3. 9.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피해학생 부모 요구사항 등

### ■ 특이사항 : ○○신문 보도( ‘학교폭력으로.....’ , 2024.3.5.)

- 
- 

### ■ 교육(지원)청 조치사항

- 3. 4. ○○지역교육청 담당자 학교 방문, 피해자 부모 상담
  -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및 비밀 유지 당부
  - 피·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교육적 선도 조치 확인 점검
- 3. 5. 피·가해 학생의 격리 및 접촉금지 확인